

NYC 통근비소득공제법

고용주와 종업원을 위한 정보

NYC 통근비소득공제법(Commuter Benefits Law)이 2016년 1월 1일 자로 시행됩니다. 이 법에 해당되는 고용주는 2016년 1월 1일부터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유자격 종업원에게 통근비 소득공제를 제공해야 합니다.

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입니까?

고용주의 장점

- 고용주는 근로소득세를 줄여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. 교통 수단에 등록하는 종업원 수가 많을수록 고용주에게는 더 많은 비용이 절감됩니다.
- 고용주는 교통비 소득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종업원을 유치 및 유지할 수 있습니다.

종업원의 장점

- 종업원은 세전 소득에서 통근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적용 대상자는 누구입니까?

고용주

적용 대상

- 임시 인력회사를 포함하여, 뉴욕시에서 풀타임* 비노조 종업원 20인 이상을 두고 있는 뉴욕시의 영리 및 비영리 고용주

*통근비소득공제법에서 풀타임 종업원이란 최근 4주간 일주일 평균 30시간 이상을 근무한 자로서 근무 시간의 일부가 뉴욕시에서 이루어진 종업원을 말합니다.

비적용 대상

- 미국, 뉴욕주, 뉴욕시 정부의 입법 및 사법 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무실과 부서, 독립 기관, 당국, 기관, 협회, 조합, 기타 주립 단체
- 연방, 주, 시 근로소득세 지불 의무가 없는 고용주

종업원

적용 대상

- 적용 대상인 고용주의 풀타임* 종업원

비적용 대상

- 4주간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
- 뉴욕시 거주자이지만 뉴욕시 밖에서 일하는 풀타임 종업원
- 단체 교섭 협의의 적용을 받는 풀타임 종업원
- 독립 계약자
- 이전 종업원

어떤 교통수단이 해당됩니까?

적용 대상

- 뉴욕시 대중교통 서비스. MTA (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) 지하철과 버스, Long Island Rail Road, Amtrak, New Jersey Transit, Metro-North 포함
- 유자격 페리와 수상택시
- 유자격 밴 합승 서비스
- 유자격 통근 버스 서비스
- Access-A-Ride, 기타 지역 준공공 교통기관

비적용 대상

- 주차비
- CitiBikes 등 자전거 이용에 따른 비용**

**연방세법상 종업원은 세전 소득을 자전거 교통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자전거 대여료는 유자격 교통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

이용 가능한 정보와 자료가 있습니까?

고용주용

311번으로 전화하거나 nyc.gov/commuterbenefits를 방문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하십시오.

- NYC 통근비소득공제법
- 통근비 소득공제 프로그램 설정

종업원용

311번으로 전화하거나 nyc.gov/commuterbenefits를 방문하여 NYC 통근비소득공제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.

근로소득세액공제 (Earned Income Tax Credit, EITC)처럼 환급 세액 공제 자격이 있는 종업원의 경우, 세전 통근비 소득공제 때문에 세금 공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조세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.

311번으로 전화하거나 nyc.gov/dcwp를 방문하여 다음 정보를 확인하십시오.

- NYC 금융지원센터 (Financial Empowerment Centers), 뉴욕 주민을 위한 일대일 무료 전문 재무 상담
- 유자격 뉴욕 거주민을 위한 무료 세무대리지원 (납세기간 중)

더 즐거운
출근시간을 위하여

**NYC 통근비
소득공제법**